| 의안 번호 | 115 |
|---|---|

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10.27)

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


## 창 원 시 의 회
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26.10.27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10. 16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10. 2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10.27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)

가.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, 영유아,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임.

나. 동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('22. 1. 1. ~ '26. 12. 31.)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,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보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실무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체와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 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 :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

### 나.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, 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), 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,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 등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(책임성)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시의 철저한 지도·감독과 성과 평가를 병행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 행정의 책임성을 확고히 확보함.
- (안정성) 기존 수탁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수탁체 변경 시 우려되는 초기 업무 공백과 대민 운영 혼선을 최소화하고, 다년간 정립된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함.
- (효율성) 수탁단체의 기존 보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행정 비용 및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, 민간 특유의 유연한 조직 관리 역량을 통해 급변하는 보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함.
- (전문성) 어린이집 및 영유아 부모의 보육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,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 현장과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현장 밀착형 보육지원 체계 구축함.

## 다. 위탁 사무 :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
○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
○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・비품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

○ 그밖에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
## 라. 위탁 시설 현황

○ 시설현황

- 소 재 지 : 창원시 의창구 중동남로 8(중동, 3・4층)
- 개 관 일 : ‘24. 2. 28.  ※최초 개관일 : ‘10. 3. 20.
- 위탁기간 : ‘22. 01. 01. ~ ‘26. 12. 31.
- 수탁기관 : 비영리법인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
- 종 사 자 : 9명(센터장 1, 종사자 8)
- 주요사업

・ (어린이집 지원) 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, 보육 컨설팅

・ (교 직 원 지원) 대체교사 및 안식휴가 대체교사 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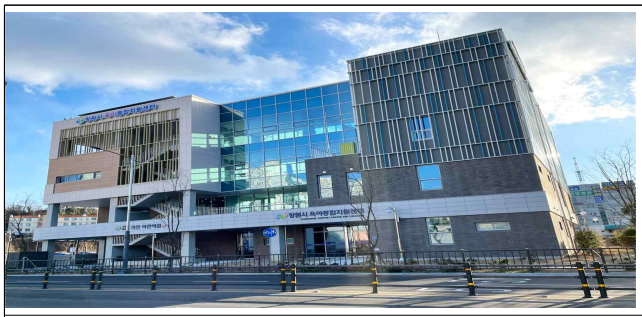
・ (가정양육 지원) 부모교육, 장난감 대여, 부모-영유아 프로그램 등

- 시설규모 : 569.43㎡

| 3층 | | | | | 4층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강당 | 물품보관실 | 세미나실 | 프로그램실1 | 프로그램실2 | 사무실 | 상담실 | 심리치료실 |
| 274.72 | 35.70 | 37.85 | 45.60 | 45.60 | 89.31 | 17.85 | 22.80 |

※ '24.02.28. 창원시여성회관창원관(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)에서 現소재지로 이전 개관함

○ 시설 관련 사진

<table>
<tr><td></td><td>
</td></tr>
<tr><td>시설 외관</td><td>위치도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3층 대강당</td><td>4층 사무실</td></tr>
</table>

## 마. 위탁기간

-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: 5년( ‘27. 1. 1. ~ ‘31. 12. 31.)
- 장난감대여사업 : 1년( ‘27. 1. 1. ~ ‘27. 12. 31.)

## 바. 소요예산 : 478,000천원(시 100%)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| 비 고 |
|---|---|---|
| 계 | 478,000 | |
| 인건비 | 371,300 | 급여, 수당, 퇴직적립금 |
| 운영비 | 106,700 | 공공 운영비, 수용비 등 |

## 사. 위탁방법 : 재계약

## 아. 수탁기관 : 비영리법인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

**자.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**

**○ 재계약 근거의 적정성**

-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및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(위탁운영 등)에 따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, 동 조례에서 위탁 기간 만료 시 재계약(재위탁)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**○ 현 수탁기관의 탁월한 보육 현장 역량 및 전문성 보유**

- 現 수탁운영자인 창원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보육 일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, 영유아 보육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옴.
- 보육정책의 흐름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고, 어린이집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보육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.

**○ 보육 정책 및 특화 사업의 연속성 확보**

- 기존의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의 다양한 보육정책과 맞춤형 특화 사업을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함
- 보육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함

**○ 운영 및 성과 평가 결과**

- ’26년 6월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,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건정성을 제고함
- 또한,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함
-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및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동의안은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○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[1]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과 영유아,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임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”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.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, 보육 정보 제공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 영유아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의 운영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아울러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[2]과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제1항[3]은 시장이 센터를 단체 또는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함.

---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**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**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(각 호 생략)

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**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** 이 경우 제2호,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
3)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 등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**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

**< 재위탁 및 재계약 > ※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**

- 재위탁: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
- 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

○ 본 동의안은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.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제2항[4]에서는 기존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요예산은 총 4억 7,800만 원으로, 인건비 3억 7,130만 원(77.7%), 운영비 1억 670만 원(22.3%)으로 편성되어 있음.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직종별 인원 및 급여·수당 등 세부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[5]에 따라 실시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보육 및 양육서비스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--

4)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 등) ② **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** 다만, **시장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**

5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6조의2(성과평가) ① **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**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**<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>**

| 구분 | 평가결과 | 운영관리(35) | | | | 사업성과(44) | | | 사후관리(21)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조직운영 효율성 (11점) | 예산관리 (10점) | 기관운영 적정성 (10점) | 사업 활성화 (4점) |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(19점) | 장난감 대여 및 이용실적 (10점) | 사업 성과 (15점) | 이용자 만족도 (10점) | 위탁의 적정성 (5점) | '25.평가 지적사항 개선이행 (6점) |
| 점수 | 92 | 10 | 9 | 9 | 4 | 17 | 9 | 14 | 9 | 5 | 6 |

○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 또한 기존 수탁자는 지역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운영 경험,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보육정책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특히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보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
○ 다만, 재계약이 단순한 위탁기간의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기관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·감독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임.

## 5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## 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(동의)**

8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